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 중 “관리를”을 “관리와 안전한 사용 환경 구성을”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보고)”를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현황 또는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 정보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종전의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중화장실 등 관리현황 보고서

■ 문서번호: (년 월 일)
■ 수신: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발신: (시설명) (관리자) (서명 또는 인)

1. 일반현황

<u>화장실 명칭</u>					<u>화장실 유형</u>			
소재지	<u>도로명주소</u>	<u>(우편번호)</u>			전화번호			
	<u>주소</u>							
대지면적	별동	m ²	건축 연면적	별동	m ²	주용도		
	부속 건축물	m ²		부속 건축물	m ²			
층수	지하: 층 / 지상: 층			<u>사용 승인일</u>		<u>리모델링 년월일</u>		
<u>소유자 (관리자)</u>								

2. 공중화장실 및 편의시설 등 현황

가. 공중화장실 등 현황

- 1) 공중화장실법 적용 근거 :
2) 공중화장실 등 현황

구분	개소수	개소당 면적 (㎡)	변기수(개)							화장실유형 (개)		대변기유형 (개)	
			계	일반		장애인등		어린이용		수세식	재래식	동양식	서양식
				대변기	소변기	대변기	소변기	대변기	소변기				
계													
남													
여					-		-		-				
- 소변기 설치 종류 : 벽부착형/바닥부착형 -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여부 : 여/부 3) <u>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대상 여부</u> : 여/부 4) <u>공중화장실 정보공개 희망여부</u> : 여/부													

(뒤 쪽)

나. 편의시설 현황

구분	세면시설		냉방 시설	난방 시설	환풍 시설	조명 시설	변기종류 · 사용중 인식장치	<u>소변기</u> <u>가림막</u>	
	일반	어린이용							
설치									
미설치									
구분	청소도구함		선반		손 건조기	탈취제 (방향제)	기저귀교환대		
	내부	외부	대변기	소변기			<u>계</u>	<u>남</u>	<u>여</u>
설치									
미설치									

※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설치계획을 작성

다. 안전관리시설 설치 현황

1) 조례로 의무설치 지정여부 : 여/부

2) 안전관리시설 세부현황

<u>구분</u>	<u>설치여부</u>	<u>위치</u>	<u>연계기관</u>
<u>비상벨</u>	<u>여/부</u>	<u>남성/여성/장애인화장실</u>	<u>관리자 또는 경찰관서, 없음</u>
<u>CCTV</u>	<u>여/부</u>	<u>화장실 출입구 촬영위치</u>	<u>관리자 또는 기타</u>

3.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현황

<u>구분</u>	<u>세부 현황</u>
시설운영관리	- 자체운영관리(), 위탁관리() ※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업체명:
청소	- 청소주기: 일 1회, 일 3회, 주 2회, 기타()
<u>소독</u>	- 4월~9월 주 3회, 10월~익년3월 주1회 소독 실시여부 : 여/부
<u>대변기 칸막이안 휴지통</u>	- 휴지통 비치여부 : 여/부 ※ 단, 장애인화장실, 기저귀교환대 설치 화장실, 여성용화장실(위생용품 수거함) 제외
관리인	- 지정여부 : 여/부, - 위생교육 여부 : 여/부 ※교육이수증 별첨 - 관리인 연락처 게시 여부 : 여/부
점검일지 작성여부	- 여/부 , - 점검주기:
<u>남녀공용화장실 여부</u>	- 여/부
<u>개방시간</u>	- 상시(24시간 개방), 정시(00:00~00:00), 미개방요일(), 기타()
<u>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u>	- 공중화장실 등 안내표지판 설치여부 : 여/부
<u>청소·점검 안내표지판</u>	- '청소·점검 중' 안내표지판 비치여부 : 여/부

공중화장실 등 관리대장

건물 전경사진	화장실 전경사진
---------	----------

1. 일반현황

화장실 명칭					화장실 유형		
소재지	도로명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지면적	별동	m ²	건축 연면적	별동	m ²	주용도	
	부속 건축물	m ²		부속 건축물	m ²		
층수	지하: 층 / 지상: 층			사용 승인일		리모델링 년월일	
소유자 (관리자)			소유자 구분	공공기관(국·지·자·체·국·가·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 특수법인), 민간(법인·개인)			

2. 공중화장실 및 편의시설 등 현황

가. 공중화장실 등 현황

- 1) 공중화장실법 적용 근거 :
- 2) 공중화장실 등 현황

구분	개소수	개소당 면적 (m ²)	변기수(개)							화장실유형 (개)		대변기유형 (개)	
			계	일반		장애인등		어린이용		수세식	재래식	동양식	서양식
				대변기	소변기	대변기	소변기	대변기	소변기				
계													
남													
여					-		-		-				
- 소변기 설치 종류 : 벽부착형/바닥부착형 -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여부 : 여/부 3)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대상 여부 : 여/부 4) 공중화장실 정보공개 희망여부 : 여/부													

(뒤 쪽)

나. 편의시설 현황

구분	세면시설		냉방 시설	난방 시설	환풍 시설	조명 시설	변기종류 · 사용중 인식장치	소변기 가림막	
	일반	어린이용							
설치									
미설치									
구분	청소도구함		선반		손 건조기	탈취제 (방향제)	기저귀교환대		
	내부	외부	대변기	소변기			계	남	여
설치									
미설치									

※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설치계획을 작성

다. 안전관리시설 설치현황

- 1) 조례로 의무설치 지정여부: 여/부
- 2) 안전관리시설 세부현황

구분	설치여부	위치	연계기관
비상벨	여/부	남성/여성/장애인화장실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 없음
CCTV	여/부	화장실 출입구 촬영위치	관리자 또는 기타

3.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현황

구분	세부 내용
시설운영관리	- 자체운영관리(), 위탁관리() ※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업체명:
관리인	- 지정일 : , - 위생교육 수료일 : - 관리인 성명 : - 관리인 연락처 :
남녀공용화장실 여부	- 여/부
개방시간	- 상시(24시간 개방), 정시(00:00~00:00), 미개방요일(), 기타()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 공중화장실 등 안내표지판 설치여부 : 여/부

4. 행·재정지원 및 처분 현황

구분	세부 내용			
시설관리 내역	개·보수 등 관리사항		연월일	금액(천원)
남녀구분·남여 변기수 설치비율 예외인정	인정일	인정사유	인정근거	비고
어린이 대·소변기와 세면대 예외인정	인정일	인정사유	인정근거	비고
보조금의 지급	지급일	지급내용	지급근거	비고
개선명령·과태료	처분일		처분내용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 ----- ----- ----- ----- ----- ----- ----- ----- <u>관리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u> ----- -----.
제8조(<u>보고</u>)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제행사 개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9조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별지 서식</u> 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 설></u>	제8조(<u>보고 등</u>) ① ----- ----- ----- ----- ----- ----- ----- ----- ----- <u>별지 제1호서식</u> ----- --. 1. ~ 3. (현행과 같음) ② <u>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현황 또는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 정보를 별</u>

	<u>지 제2호서식에 따라 행정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 다.</u>
--	---